



상주시의회 공고 제2019 - 17호

「상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66조의2 및 「상주시의회 회의규칙」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9년 8월 16일

상 주 시 의 회 의 장



「상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 입법예고

1. 제정이유

상주시 소상공인의 시설개선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소상공인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(안 제1조 ~ 제2조)
- 나. 지원내용, 사업비 지원 및 지원대상자 범위 (안 제3조 ~ 제5조)
- 다. 소상공인 지원 심의위원회 (안 제6조 ~ 제11조)
- 라. 지원신청, 대상자 선정·통지 및 지원방법 (안 제12조 ~ 제16조)
- 마. 변경통보, 지원중지 및 환수 (안 제17조 ~ 제18조)
- 바. 사후관리 (안 제19조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·법인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상주시의회의장(참조:

상주시의회 의회사무국, 상주시 중앙로 111, 상주시의회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(전화: 054-537-7841, FAX: 054-535-9854, 상주시의회 홈페이지: www.sangjuCouncil.go.kr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
나. 성명(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

☐ 조례명: 상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

- 성명(단체명): (단체의 경우 단체명, 대표자)
- 주 소:
- 연 락 처:

조 례 안 내 용	의 견 내 용	비 고